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 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재생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,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과 다회용기를 회수·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311호, 2023. 3. 28. 공포, 2024. 3. 29. 시행)됨에 따라, 재생원료로 용어를 정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회용기의 종류를 정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다회용기를 회수·세척·재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 또는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다회용기의 종류를 규정함(안 제8조의2)
- 나. 재생원료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(안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)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-

##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“**법 제9조의5제1항**”을 각각 “**법 제9조의3제1항**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다회용기의 종류) 법 제10조의3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.

1.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제2조제1호라목1)의 일회용 컵·손가락·포크·ナイ프·빨대를 대체하는 것
2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중 1회용 기구를 대체하는 것
3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5호의 용기·포장 중 1회용 용기·포장을 대체하는 것
4.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 사업자가 제품을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

해 사용하는 1회용 포장을 대체하는 것

5.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6조제3항에 따른 유통포장재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재활용원료”를 각각 “재생원료”로 한다. 제22조제2항제2호 중 “재활용한”을 “재생이용한”으로, “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”를 “폐플라스틱재생원료”로 한다.

제48조제3항제1호 중 “법 제9조의3제2항”을 “법 제9조의4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의5를 제4호의6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5.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검토 및 확인 · 조사

별표 1의2 제1호 중 “법 제9조의4제2항”을 “법 제9조의2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 중 “법 제9조의4제2항”을 “법 제9조의2제4항”으로 한다.

별표 8 제2호마목3)부터 7)까지를 각각 4)부터 8)까지로 하고, 같은 목에 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)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경우(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)	50	100	200
---	----	-----	-----

## 부 칙

이 영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의2(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) ① <u>법 제9조의5제1항</u>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<u>별표 1의2</u>와 같다.</p> <p>② 환경부장관은 <u>법 제9조의5제1항</u>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7조의2(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) ① <u>법 제9조의3제1항</u>----- ----- ----.</p> <p>② ----- <u>법 제9조의3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8조의2(다회용기의 종류) 법 제10조의3</u>에서 “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</u>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<u>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1. 「<u>위생용품 관리법</u>」 제2조 제1호라목1)의 <u>일회용 컵·손가락·포크·ナイ프·빨대</u>를 대체하는 것</p> <p>2. 「<u>식품위생법</u>」 제2조제4호</p>

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 
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중 1회  
용 기구를 대체하는 것

3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5호  
의 용기·포장 중 1회용 용기  
·포장을 대체하는 것

4.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 
법」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 
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품을  
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소  
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해 사용  
하는 1회용 포장을 대체하는  
것

5.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 
법」 제6조제3항에 따른 유통  
포장재

제13조(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 
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·재활  
용비율) ① 법 제12조제2항제2  
호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 
사용한 제품·재료·용기의 제  
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·  
재료·용기별로 폐기물부담금  
을 면제받기 위하여 회수·재활  
용하여야 하는 비율은 다음 각  
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

제13조(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 
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·재활  
용비율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말한다.

1.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·재료  
· 용기: 해당 제품·재료·용  
기의 연간 출고·수입량(재활  
용원료의 양을 포함한다)의 1  
00분의 20

2.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·재  
료·용기: 해당 제품·재료·  
용기의 연간 출고·수입량(재  
활용원료의 양을 포함한다)의  
100분의 80

② ~ ④ (생략)

제22조(재활용의무율의 산정·고  
시 등) ① (생략)

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다음 각  
호의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  
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  
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  
다. 다만, 법 제15조의2제3항 전  
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 
제외한다.

1. (생략)

2.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  
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  
료(이하 “폐플라스틱재활용원  
료”라 한다)가 전년도에 제품

-----.

1. -----  
-----  
-----재  
생  
원료-----  
-----

2. -----  
-----  
-----재  
생원료-----  
----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재활용의무율의 산정·고  
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재생이용한 ---  
-----  
----- “폐플라스틱재생원료”  
-----

- 포장재에 사용된 양을 제품
- 포장재별로 산정한 자료(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)

③·④ (생략)

제48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·② (생략)

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.

1.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신청의 접수 및 평가

1의2. ~ 4의4. (생략)

<신설>

4의5. (생략)

5. ~ 20. (생략)

④·⑤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48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.

1. 법 제9조의4제2항-----  
-----  
-----

1의2. ~ 4의4. (현행과 같음)

4의5.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검토 및 확인·조사

4의6. (현행 제4호의5와 같음)

5. ~ 20. (현행과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